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05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위성곤·이건태·신정훈
박균택·김영호·최혁진
진성준·박지혜·이학영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2040년·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축 경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9호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2030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로, “35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하여 2050년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본다.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0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5 이상

9. 제8조의2에 따라 산출된 국가 탄소예산

10. 제19조의3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권고사항

1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2.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탄소예산 산출) ①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

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가기본계획의 내용)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3.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 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 · 예측 · 영향 ·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국가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기본계획 및 제10조의3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국가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도계획을 작성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제출·보고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위원회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군·구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

④ 시·군·구계획의 내용, 수립·변경 절차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계획”은 “시·군·구계획”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및 지원정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가기본계획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국가기본계획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기본 계획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국가기본계획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가기본계획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배분 방향 및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기본계획 간의 조정 및 연계
5. 그 밖에 국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50명 이상 100명”을 “30명 이상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전환”을 “전환, 기후재정·금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4.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명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제19조의4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9.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

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소통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과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

고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인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요구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 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정보센터”를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을 “구축”으로 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원은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원은 정책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정책지원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 제13조의2, 제16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15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
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 1. ~ 17. (현행과 같음) <u>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말한다.</u>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3조(기본원칙) ----- ----- ----- -----. 1. ~ 8. (현행과 같음) <u>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u>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

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

축 목표 등) 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
까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
출량은 순배출량으로 본다.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0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5 이상

② -----
-----위하여 2050
년까지의 -----

③ -----

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신설>

<신설>

<신설>

⑥·⑦ (생략)

<신설>

----- 위하여 2050년까지의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8조의2에 따라 산출된 국가 탄소예산

10. 제19조의3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권고사항

1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2.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탄소예산의 산출) ①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
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
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
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
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
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
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
가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
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
회는 이를 심의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탄
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

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가기본계획의 내용)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신 설>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의3(집행계획의 수립 등)

<신 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국가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기본계획 및 제10조의3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

	<u>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국가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u> <u>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u>	<u>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u> <u>①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u>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야 한다.

③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도계획을 작성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계획을 기후에너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제출·보고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위원회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군·구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군·구계획의 내용, 수립·변경 절차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

<신 설>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국가기본계획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국가기본계획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기본계획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국가기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생략)	<u>본계획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1. 국가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u> <u>2. 국가기본계획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u> <u>3.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배분 방향 및 배분·조정 내역</u> <u>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 기본계획 간의 조정 및 연계</u> <u>5. 그 밖에 국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신설>

⑤ ~ ⑨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
-- 30명 이상 60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전환, 기후재정·금융 -----

3.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4.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명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

2. <u>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u> 3. <u>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4. <u>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u> 5. <u>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6. <u>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u> 7. <u>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u> 8. <u>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u> 9. <u>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u> 10. <u>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u>	<u>에 관한 사항</u> 2. <u>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u> 3. <u>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4. <u>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u> 5. <u>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6. <u>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u> 7. <u>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u> 8. <u>제19조의4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u> 9. <u>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u>
--	---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
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
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
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
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신 설>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
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
한 사항

12.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
대를 위한 교육, 홍보, 소통
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
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
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
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
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
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신 설>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 예산의 산출과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기후시민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시민들이 기

<신 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1. ~ 3. (생략)

② (생략)

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
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
여 모인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
는 기후시민회의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
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 연
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기후시민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회
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요구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
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
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
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
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
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
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
식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
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
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
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
계의 구축) ① -----

----- 하여
야 한다.

② -----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해양수산·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의무대상 정보·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 각종 정보·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구
축-----

-----.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 등을

<신 설>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원은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원은 정책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생 략)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u>위한 조사·연구 등</u>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 ⑤ (생 략)	<u>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위한 정책지원 등</u>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